퇴직연금 법정 교육자료

2019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알기 쉬운 퇴직연금



BNIK 부산은행

| _ | | | |
|---|--|--|--|

Contents

- 1. 퇴직연금제도의 이해
- 2. 퇴직연금제도 운영
-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4.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로 적립금 이전
- 5.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과세 체계
- 6.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 방법
- 7.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 청구 절차
- 8. 자산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
- 9. 운용상품 및 안정적 투자 원칙
- 10. 퇴직연금 수수료
- 11.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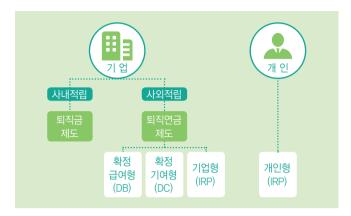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 받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동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실시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자료입니다.

회의연금 제도의 이해

[퇴직연금제도의 정의]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2012.7.26이후 신설 사업자의 경우 사업 설립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 | -1-1-7 o (-1/0 p -1)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퇴직연금(IRP) | |
|-----------------|--|---------------------------|--------------------|------|
| 구분 | 확정급여형(DB형) | | 기업형 ^{주1)} | 개인형 |
| 급여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이상 | 부담금 + 운용손익 | | |
| 기업부담금 수준 | 퇴직부채대비 법정최소수준 ^{주2)}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퇴직급여 1/12 이상 | | 퇴직급여 |
| 적립금 운용주체 | 기업 (운용손익 귀속: 기업) | 근로자 (운용손익 귀속: 근로자) | | ł) |
| 개인부담금 추가납입 | 불가능 (개인형IRP 가입 후 추가납입 가능) | 가능 (연간 1,800만원이내) | | |
| 중간정산, 중도인출 등 | 중간정산/중도인출 불가 | 법적요건 충족시 중도인출 가능 | | 가능 |
| 기타 |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재정검증 ^{주3)} 실시 | 기업부담금 지연 납입시 _ 지연이자 발생 | | - |

^{주1)}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 규약의 신고 없이 도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DB)제도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 ·법적 퇴직급여는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이상이며, 기업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법정 최소적립 수준)
- ·기업의 부담금 수준은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

^{주2)} 2018년 : 80%, 2019 ~ 2020년 : 90%, 2021년 이후 : 100%

^{주3)}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입 사업장의 적립금평가액이 법정 최소적립수준 이상인지 검증 하는 절차

퇴직금 =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

확정급여형(DB) 퇴직금 지급 예시

ex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매년 임금 상승률 10% 인상 가정)



퇴직금 =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242만원 × 3년 = 726만원

■ 확정기여형(DC)제도/기업형IRP제도

- ·기업의 부담금 수준이 임금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
- ·기업은 법정부담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적립(100%이상)
-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급여는 기업부담금 + 운용손의

퇴직금=회사의 부담금* + 운용수익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확정기여형(DC) 퇴직금 지급 예시

ex 연봉 2,400만원(월 200만원)인 근로자가 입사 후 3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는? (매년 임금 상승률 10% 인상 가정)



200만원 + 220만원 + 242만원 + 운용수익 = 662만원 + a(적립금 운용수익)

■ 기업형IRP제도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설정하는 개인형퇴직연금 특례제도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를 설정하며, 근로자별로 금융기관 선택 가능
- ·운용구조 등 특징은 확정기여형(DC)제도와 동일/규약신고 절차 생략

■ 개인형IRP제도

퇴직시 수령하는 퇴직일시금 또는 자기의 부담금을 개인형RP제도에 납입하면, 세액이연 또는 세액공제 혜택과함께 이를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만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 수급요건에 따른 급여지급 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DB · DC · 기업형IRP | 개인형IRP | | |
| 연금 | 개인형IRP로 이전 후 수령 | 만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퇴직금 있는 경우 가입기간 요건없음) 연금수급기간 10년 이상 (2013.3.1이전 연금계좌에 최초 가입한 경우는 5년 이상) ※연간 연금수령 한도 존재 | | |
| 일시금 |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 | | |

2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퇴직금 수급권보호]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사내유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업 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퇴직금 재원을 금융기관에 별도 보관하므로 회사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제공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가입자가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담보대출은 관계부처 협의 중으로 현재 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DC/IRP)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입자는 아래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기업부담금+운용손익]은 퇴직소득세로 [개인부담금 + 운용손익]은 기타소득세로 과세 후 지급합니다.

중도인출 시 기운용 중인 정기예금은 특별중도해지 처리됩니다.

■ 중도인출 사유 및 구비서류

| 법정사유 | 서류 |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 ①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②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
| 구구텍사인 기업사가 논인 당의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택매입시▶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주택신축시▶건축설계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등기후신청시▶구입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도인출 가능 |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 ①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② 현주소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확인) ④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전세금,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영수증 ✓ 잔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도인출 가능 |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 ① 병원진단서(6개월 이상 치료기간 명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양가족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는경우 |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또는 법원의 파산선고문(최근 5년 이내) |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① 시 군 구청에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피해조사(확인)자료 등 |

■ 부담금 미납 시 지연이자(DC / IRP 제도 적용)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를 가입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함.

지연이자율(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의 다음날~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연 10%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부담금 납입일 : 연 20%

■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

- 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
-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렵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③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전

회사가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계약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후 퇴직연금 규약을 변경 신고

1. 규약변경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청취하여 규약변경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수리 (*개인형IRP는 규약변경 생략)

2. 계약이전 신청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계약체결 계약이전 전 퇴직연금사업자에 계약이전을 신청

3.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으로 가입자정보 이전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으로 적립금 이전

4. 퇴직연금제도의 운용

새로운 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 운영

〈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약이전(계좌이체) 절차 〉

계좌이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등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 (1) 연금저축계좌 상호간 ②개인형IRP 상호간 ③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간의 이체가 해당됨

단, ③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IRP 간 이체는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한 가입자에 한하여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 가능

*연금수령요건: 만55세이상, 가입기간 5년이상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연금계좌의 경우 가입기간 요건 불요)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조〉

-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금품
-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제도의 기업부담금 산정 기준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 확정급여형(DB)제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





4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IRP제도로 적립금 이전

■ 개인형IRP제도로 의무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시 퇴직급여는 개인형IRP로 이전되어야 함

〈 퇴직급여 개인IRP 의무 이전 예외사유 〉

- ① 만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②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이하인 경우
-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절차

- 1. 퇴 직 자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개인IRP)가입
- 2. 금 융 기 관 퇴직자에게 개인IRP 가입확인서 발급
- 3. 퇴 직 자 사용자에게 퇴직신청
- 4. 사용자(기업)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신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제출필요
- 5. 퇴직연금사업자 개인IRP에 세전 퇴직급여 지급
- 6. 사용자(기업) 확정급여형(DB)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신고 *확정기여형(DC)/IRP 제도는 설정한 사용자는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신고(사용자 별도조치 불요)
- 7. **퇴 직 자** 개인IRP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 신청하여 수령

TIP!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세금 절약 방법

- STEP 1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
- STEP 2 IRP계좌에 세후 퇴직금 이체 후 퇴직 소득세 환급신청
- STEP 3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확인절차 후 회사가 IRP계좌로 입금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고,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기존 세금의 30% 절감



■ 개인IRP 이전 시 효과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퇴직금을 개인IRP로 이전시 퇴직소득세는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 까지 과세이연 세후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것보다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2. 운용손익 과세이연

개인IRP에서 적립금 운용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의 과세 없이 운용되며 일시금 또는 수령시까지 과세이연 되어 실질 운용손익이 증가

3.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절세** 개인IRP에서 연금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

■ 연금수령 시 예상 수령액

(세전)

| 퇴직급여 | 5천만원 | 1억원 |
|---------|--------|--------|
| 10년 수령시 | 월444천원 | 월888천원 |
| 15년 수령시 | 월306천원 | 월612천원 |
| 20년 수령시 | 월237천원 | 월475천원 |

적용금리 연 1.7%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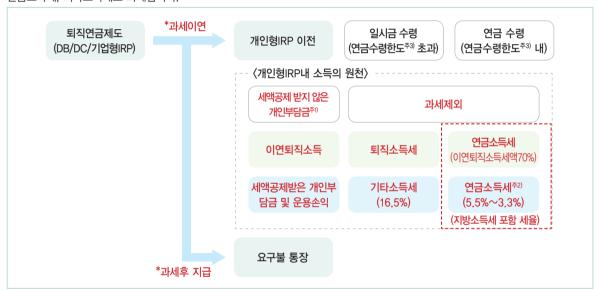
■ 퇴직급여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금 신고 · 납부

| 퇴직연금제도 | 원천징수의무자 | 세금 신고 · 납부 방법 |
|----------------------|-------------------|--|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회사) | •퇴직급여를 개인IRP(과세이연계좌O)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이연 신고 |
|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기관) | (과세이연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음) •퇴직급여를 <mark>일반계좌(과세이연계좌X)로 지급하는 경우</mark> 퇴직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지급하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신고납부 |

5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과세 체계

■ 과세 개요

퇴직연금은 부담금의 납입과 운용시 과세를 이연하고, 급여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형태(연금/일시금)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주1) 개인부담금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지급합니다. 소득·세액 공제한도 이내에서 소득·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국세청 홈택스 or 관할세무서 민원실 발급)
 - ② [연금계좌 2개 이상의 경우] 연금납입확인서 (금융기관발급)
- ^{주2)} 소득 · 세액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에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 주3) 연금수령한도라?

- *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까지 적용. 단, 2013.3.1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퇴직소득은 근속기간 동안 누적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연분) 연평균 과세표준을 구하고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연평균 퇴직소득세를 계산 한 뒤 근속연수를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인 연분연승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환산급여 수준별 차등공제 $(35\%\sim100\%)$ 로 변경·개정 되었습니다. 단, 갑작스런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2016년 ~2019 년까지 아래 비율에 따라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합니다.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 종전방식 적용비율 | 80% | 60% | 40% | 20% |
| 개정방식 적용비율 | 20% | 40% | 60% | 80% |

예) 2019년도 퇴직소득세 = 종전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20% +개정방식에 의한 퇴직소득세×80%

| | 종전 방식 (2015.12.31까지 퇴직시) |
|------------|--|
| 퇴직급여 | |
| (-) 퇴직소득공제 | ① 근속연수공제 ② 정률공제 : 퇴직급여 × 40% |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급여 - 퇴직소득공제 |
| 퇴직소득세 | 연평균과표 = 퇴직소득과세표준 \div 근속연수 \times 5배수* 퇴직소득세 = (연평균과표 \times 세율**) \times 근속연수 \div 5배수* |
| | * 2013.01.01 이후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5배수 적용 ** 연평균과표 구간에 따른 세율 |



| 개정 방식 (2016.1.1부터 퇴직시) | | |
|----------------------------------|--|--|
| 퇴직급여 | | |
| (-) 근속연수공제 | ①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배수 | |
| (-) 환산급여별공제 | ②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 | |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별공제 | |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율*] ÷ 12배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 |

※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3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 -20년) |
| | |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백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800만원+(800만원 초과분의 60%) |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의 35%) |

※ 세율표(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표준 | 세율 및 세금계산 |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 초과 금액)×15% |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582만원+(4,600만원 초과 금액)×24% |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35% |
| 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60만원+(3억원 초괴금액)×40% |
| 5억원 초과 | 1억7,460만원+(5억원 초과금액)×42% |

■ 연금소득세 과세체계

연금 수령시 소득 원천별 연금소득세로 연금 외 수령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로 과세합니다.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에 소득자가 종합소득 합산신고 하여 세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단, 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 소득 원천 별 연금소득세율 〉

- 퇴직금 : 퇴직소득세의 70%

- 소득·세액 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 연령별 연금소득세 5.5 ~3.3%

(70세 미만 : 5.5%, 70세~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 3.3%)

■ 개인IRP 인출시 과세

| 인출 | 사트이 이런 | 연금 신청전 | 연금 신청 후 | | |
|----|------------------------------|--------|--------------------|--|--|
| 순서 | 소득의 원천 | | 연금수령한도 초과 | 연금수령한도 내 | |
| 1 | 소득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 | 비과세 | 비과세 | |
| 2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 |
| 3 | 소득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 | | 기타소득세 5%,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5.5 ~3.3%) 연간 1,200만원 초과시 <mark>종합소득 합산과세</mark>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 |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소득세(5.5~3.3%, 분리과세)로 과세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③ 해외이주 ④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 상기 ④의 사유로 해지 시 아래의 한도까지만 분리과세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며, 초과액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한도 =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 150만원) + 200만원]

- ※ 위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입니다.

■ 기타소득세 과세체계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납입액과 계좌 내 운용손익에 대하여 연금외수령 시(계좌해지 또는 연금수령한도 초과)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분리과세)로 과세 후 지급합니다.

6 퇴직연금제도 중단 및 폐지 시 처리방법

■ 퇴직연금제도 중단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는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 ①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 ② 가입자 교육의 실시
- ③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유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 ①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 ② (가입자교육을 위탁 받은 경우) 가입자 교육의 실시
- ③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등

■ 퇴직연금제도 폐지

노사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도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업 도산 시 퇴직급여 청구 절차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들은 회사의 경영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됨. 회사가 폐업·도산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자격상실 여부가 확인되면 회사의 청구 없이 근로자의 청구로 청구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의 지급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1. 당해 사업장의 폐업. 부도. 사실상 도산 등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 퇴직급여청구(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①~② 중 택일)
 -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②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1588-0075)

■ 퇴직급여 지급액

- 확정급여형(DB)제도: 금융기관에 등록된 최종 추계액 × 적립비율
-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제도: 해당 가입자 적립금

8 자산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

■ 노후 설계의 배경 및 중요성

| 평균 수명 증가 | 은퇴 후 노후비용 증대 |
|------------|---------------|
| 고용 개념 변화 | 조기 퇴직 및 이직 증가 |
| 인구 고령화 가속 | 사회적 부양 부담 가중 |
| 저금리 저성장 경제 | 노후 준비 어려움 심화 |

■ 자산관리의 일반적 원칙

-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
-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
-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
- 현금흐름을 중시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
- 3층 연금의 활용



■ 연령대별 자산관리

| 구분 | 주요 투자목표 | 자산관리 고려사항 |
|-------------------------------|--|--|
| 20대 사회초년기 졸업,취직,결혼,능력개발 | · 결혼자금 마련 · 전세자금 마련 · 취업 후 홀로서기 | · 결혼 전 저축비중 확대 · 투자자산 비중 확대 · 장기적인 계획 수립 |
| 30대 가족형성기 결혼생활, 자녀출산,육아,교육 | · 새 자동차 구입 · 육아 비용 마련 · 비상 예비자금 마련 · 주택 구입자금 마련 · 자녀교육 자금 마련 | · 결혼 전 저축비중 확대 · 투자자산 비중 확대 · 장기적인 계획 수립 |
| 40대 자녀성장기 자녀교육,재산형성 | · 자녀 교육자금 마련 · 주택 규모 넓히기 · 자녀 결혼 자금 마련 · 은퇴자금 마련 | · 과도한 사교육비 등 지출관리 · 지속적 노후준비와 부채관리 |
| 50대 가정성숙기 자녀결혼,은퇴,노후준비 | · 자녀 결혼자금 · 은퇴 후 재무적 독립 · 노후생활 준비 · 상속 및 증여 준비 | · 현금흐름 창출 및 은퇴자금 준비 · 안전자산 비중 확대 |
| 60대 노후생활기 제2인생기 노후 생활시작 | · 은퇴 및 노후생활 · 상속 설계 실행 · 사회 봉사 · 노후 생활 즐기기 | · 안정자산 보유 및 현금흐름 관리 |

*자료: 한국 FPSB

9 운용상품 및 안정적 투자 원칙

■ 자산유용방법

퇴직연금 적립금은 투자자(DB: 사용자, DC/IRP: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따라 정기예금 또는 수익증권 (펀드)으로 직접 운용지시 할 수 있습니다

운용상품 선정

운용상품의 위험과 수익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운용상품과 운용비율을 선택

운용방법 등록/변경

- 매수예정상품 등록/변경: 새로 입금하는 자금에 적용할 운용지시 변경절차
- 보유상품 변경 : 보유 중인 자금에 적용할 운용지시 변경절차 (보유중인 운용상품을 매도 후 다른 운용상품을 매수)
- ※ 운용방법 등록/변경은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조회 · 변경 가능

■ 운용상품의 종류

1) 정기예금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며 부담금 납입시 고시되는 이율을 적용하여 정해진 만기 (1년, 2년, 3년)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고,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만기 연장됩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상품이더라도 은행별, 만기별 적용이율이 다양하므로 입금하시기 전 적용이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정기예금

KEB하나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신한은행,대구은행,산업은행 1년,2년,3년 정기예금

저축은행 정기예금

BN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1년, 2년, 3년 정기예금

- ※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고려하여 4.5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 ※ 예금자보호 안내
 - ①확정급여형(DB):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②확정기여형(DC):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2) 실적배당상품(수익증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수수료와 별도로 펀드에서 정하는 판매수수료, 운용보수, 환매수수료 등이 부과되며, 기준가격, 수익률 기본정보 등은 부산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험자산 투자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감독규정에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위험자산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 적립금의 안정적 투자원칙

| 주식형 | 주식60% 이상 | 고위험 고수익 추구 |
|-------|-----------------|---------------------------------|
| 주식혼합형 | 주식40%이상 ~ 60%미만 | 채권투자의 안정성과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
| 채권혼합형 | 주식40%미만 | 안정적인 수익추구 |
| 채권형 | 주식0% | 2072 771 |

• 장기투자

자산운용전략을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투자방법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함 → 장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함

◆ 분산투자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대상별, 종목별, 지역별, 시가별로 분산하여 투자위험을 줄이는 투자방법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할 수 있음

◆ 적립식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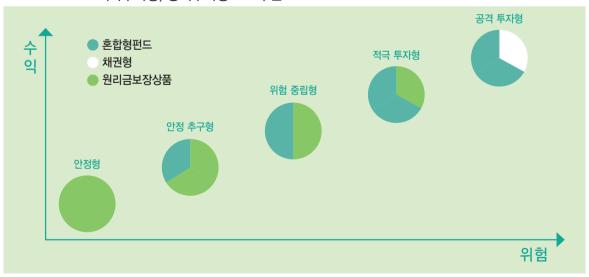
정기적, 장기적으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투자방법 매매단가 평준화로 투자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

◆ 생애 주기 투자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구성을 조정하는 투자방법 젊을 때는 적극적, 은퇴기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통하여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

■ 자산배분 및 자산구성비율의 의의

-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일련의 투자과정
- ◆ 자산구성비율: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



※ 상기 자산배분모델은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자산운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예시한 것입니다.

10 퇴직연금 수수료

■ 퇴직연금수수료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운용관리 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 운용관리업무 | 자산관리업무 |
|---|---|
|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計理)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 · 보관 · 통지 자산관리사업자에게 운용방법의 전달업무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1. 계좌의 설정 및 관리 2. 부담금의 수령 3.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4.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5. 급여의 지급 6.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업무 |

■ 수수료율(연율)

| 구 | 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형퇴직연금 | |
|--------------------------|----------|--|---|--|--|
| | 계산기준 | 적립 | l금 자산평가액의 평균 | 잔액 | |
| | 취득방법 | 후취/ 적립금 차감 | 후취/ 현금별납 | 후취/ 적립금 차감 | |
| 운용관리 | 취득시기 | | 매년 계약 응당일 | | |
| 수 수료 | 수수료율 | · 30억 미만 : 연 · 50억 미만 : 연 · 100억 미만 : | 적립금 자산평가액의 평균잔액 후취/ 후취/ 후취/ 적립금 차감 현금별납 적립금 차 매년 계약 응당일 · 10억 미만 : 연 0.40% · 30억 미만 : 연 0.35% · 100억 미만 : 연 0.35% · 100억 미만 : 연 0.25% · 100억 미만 : 연 0.25% · 100억 이상 : 연 0.20% 신탁재산 평가액의 평균잔액 후취/ 후취/ 후취/ 수취/적립금 차감 현금별납 신탁재산 경제 등당일 연 0.30% 연 0.30% ②차년도 : 12%, 4차년도 : 15%, 5차년도 : 20% 할인 | · 기업형 : 연0.40% (1억이상 0.38%) · 개인형 : 연0.30% (1억이상 0.28%) | |
| | 계산기준 | 신틱 | 신탁재산 평가액의 평균잔액 | | |
| 자산관리 | 취득방법 | 후취/ 적립금 차감 | | 후취/ 신탁재산 차감 | |
| 수수료 | 취득시기 | 매년 계약 응당일 | | | |
| | 수수료율 | 연 | 0.30% | 연 0.20% (1억이상 0.18%) | |
| 장기고객할인률 | 2차년도 : 1 | 2차년도 : 10% , 3차년도 : 12%, 4차년도 : 15%, 5차년도 : 20% 할인 | | | |
| 비대면채널가입할인 율(개인형IRP한함) | 자산관 | 자산관리 수수료율 및 운용관리 수수료율 각각0.1% 차감 적용 | | | |
| 수수료부담주체 | | 사업자 (단, 개인부담금 | 에 대해서 개인부담) | | |

[※] 수수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 계약 및 운용관리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개인IRP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

퇴직급여를 수령한(예정) 근로자 또는 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급여 또는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립 및 운용하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자(급여생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 가입방법

-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가입

■ 가입자격 증빙서류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1
- 근로소득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중 택1
- 퇴직급여 수령(예정)자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급여 이전안내

- 직장 근무 중 발생한 퇴직급여를 개인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혜택
- 이직시 이직한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IRP에 통산하여 관리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하여 절세효과

■ 개인부담금 적립안내

- 직장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외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준비
- 개인부담금 적립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 적용 받아 절세효과
 - ① 연간납입한도: 1.800만원
 - ② 납입방법: 연간 납입한도 내 자유납입
 - ③ 세액공제: 당해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최대1,15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백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3.2% 세액공제(최대924,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 ④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개인부담금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

■ 연금 지급 신청

- 5년 이상 가입하고 만55세 이후에 별도 연금지급신청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이상] 단. 개인IRP에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경우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만55세 이후에 연금신청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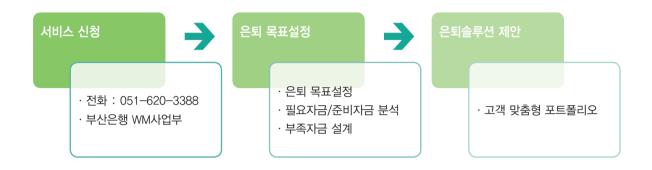
■ 연금 지급 주기

- 월 / 3개월 / 6개월 / 연 지급 중 선택

《《소법심의필 2019-523(심의일자: 2019.5.23》/ 유효기간:2019.5.23~2020.12.31》》》

『부산은행 행복스케치』서비스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가 미래에 직면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노후준비플랜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산은행에서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고객님을 위하여 『찾아오는 행복스케치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산은행 행복스케치』아카데미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고객님을 위하여 『아카데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아카데미에는 부산은행 고객이시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제 목 | 100세 시대 부산은행 행복스케치 | |
|------------|-----------------------------------|--|
| | | |
| 내 용 | 100세 시대 노후준비 트랜드와 노하우 | |
| 강 사 | 부산은행 WM사업부 이민희과장 | |
| 일 정 | 2019년 하반기 중 | |
| 장 소 | 부산은행 본점 (추후공지) | |
| 신청방법 : 부산원 | 은행 WM사업부 이민희 과장 TEL: 051-620-3388 | |

* 장소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미나에 잠석하신 고객님께 1:1 은퇴설계 서비스가 제공뇝니다

빠르고 편리한 안전한 전자금융

홈페이지/인터넷뱅킹 www.busanbank.co.kr 모바일 홈페이지 m.busanbank.co.kr 텔레뱅킹 1588-6200/1544-6200

고객센터

금융상담/이용시간(평일: 9:00~18:00)

1588-6200/1544-6200 해외 82-2-1588-6200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www.moel.go.kr/pension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

pension.fss.or.kr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 _ | | | |
|---|--|--|--|

BNIK 부산은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안내 www.moel.go.kr/pension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안내 pension.fss.or.kr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빠르고 편안한 안전한 전자금융

고객센터

홈페이지 / 인터넷뱅킹

모바일 홈페이지 m,busanbank,co,kr 전국어디서나

음성으로 조회, 송금은

1544-6200 / 1588-6200

1588-2800